

위 입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 리 (www.hnr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hnr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투자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상품명		투자금액	

*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계좌
-----	--	------	--	-----	------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DLF 상품’의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자산운용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1심, 2심 및 3심), 증거확보를 위한 형사고소고발, 수익자총회 개최요구 등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필요한 대리권을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민사조정신청 포함),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 및 판결금(화해금, 조정금 포함)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증거확보를 위한 형사고소고발, 수익자총회개최요구
3.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관련 기관에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2019. . .

위임인

(인)

- ① 신분증 사본 첨부
- ② 가입통장, 상품가입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각 사본 첨부
- ③ 은행직원과의 녹음파일, 문자내역,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
- ④ 접수 후 환매 또는 만기상환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환매 또는 만기 상환을 받으신 이후에 해당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갑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DLF 상품과 관련하여

① 갑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자산운용사 및 기타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사무

② 그 이외 갑의 투자손실금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행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고발,

- 수익자총회개최요구, 내용증명발송 등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행위

- 증거확보를 위한 행위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은 별도 신청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행한 의뢰인에 한하여 진행

③ 기타 위 사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무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손실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 다만 상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을은 상소심을 사임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용】

제6조 【제1심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 본안 제1심 소송비용(증거확보비용포함)과 본안 제1~3심 변호사 착수보수로 투자금액의 0.5%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 1심 인지대(통상 청구금액의 약 0.4% 발생),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제1심의 소송비용과 녹취파일의 녹취서 제작 등 증거확보비용으로 사용하고 1심판결 후 남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 착수금으로 보기로 한다. 단, 항소심 등을 위한 인지대 등은 갑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을이 대행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8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을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자발적 배상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이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중 아래 비율에 따른 금원(비율은 누적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① 본안소송 제기 이전 을이 대행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별도로 없음
- ② 1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
- ③ 2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3%**
- ④ 3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우리은행용】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성과보수의 지급방식

① 갑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② 을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라.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사건 처리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용】

제13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요사항의 결정】 을은 합의안, 화해안, 조정안의 수락여부,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 화해, 합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갑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동의】 갑은 을에게 제1조(목적)와 제2조 (위임한계)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 . .

갑 : 위임인 (인)

을 :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 주 영, 서 정

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갑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DLF 상품과 관련하여

① 갑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자산운용사 및 기타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사무

② 그 이외 갑의 투자손실금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행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고발,

- 수익자총회개최요구, 내용증명발송 등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행위

- 증거확보를 위한 행위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은 별도 신청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행한 의뢰인에 한하여 진행

③ 기타 위 사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무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손실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 한다. 다만 상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을은 상소심을 사임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제1심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 본안 제1심 소송비용(증거확보비용포함)과 본안 제1~3심 변호사 착수보수로 투자금액의 0.5%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 1심 인지대(통상 청구금액의 약 0.4% 발생),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제1심의 소송비용과 녹취파일의 녹취서 제작 등 증거확보비용으로 사용하고 1심판결 후 남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 착수금으로 보기로 한다. 단, 항소심 등을 위한 인지대 등은 갑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을이 대행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8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을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자발적 배상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이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중 아래 비율에 따른 금원(비율은 누적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① 본안소송 제기 이전 을이 대행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별도로 없음
- ② 1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0%**
- ③ 2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3%**
- ④ 3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의 **15%**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우리은행용】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성과보수의 지급방식

① 갑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② 을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7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지급지체시 지연이자율은 연 12%로 한다)

라.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사건 처리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용】

제13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요사항의 결정】 을은 합의안, 화해안, 조정안의 수락여부,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 화해, 합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갑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동의】 갑은 을에게 제1조(목적)와 제2조 (위임한계)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 . .

갑 : 위임인 (인)

을 :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 주 영, 서 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원 제출 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및 사건진행경과(결과)보고, 송소금 수령 필요사항
- 청구서 발송,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필요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법인의 경우, 법인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적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 필요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대한민국 법원, 검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

-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케팅/홍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신규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접수중인 소송안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의 달성 후 지체없이 폐기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개인정보의 마케팅/홍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마케팅 활용 서비스 안내 및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현금영수증발행 번호(휴대폰번호)

동의인 성명

(인,서명)

서면질의 응답서¹⁾

(작성할 내용이 없으면 빈칸으로 놔두셔도 되고, 반대로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종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1. 진술인의 성명과 나이 그리고 하시는 일, 가입하신 상품명은 무엇인가요? (상품이 여럿인 경우,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²⁾)

- 진술인 성명:
- 나이:
- 직업:
- 상품명:

2. 진술인은 진술인 본인의 명의로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DLF 상품” (이하 ‘본 금리연계상품’)에 투자하였는가요? (예, 아니오로 대답)

2-1. 진술인은 범무범인 한누리가 진술인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업무도 대행하여 주기를 희망하나요? (예, 아니오로 대답)

3. (2항에 대하여 ‘아니오’ 로 대답한 경우) 귀하가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명의로 본 금리연계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셨다면 계좌명의자(원고)는 누구이고 진술인 본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계좌명의자(원고) 성명:

진술인과의 관계:

1) 본 서면질의 응답서는 재판부에 증거로서 제출될 수도 있는 자료이므로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장이나 상품설명서 등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용】

4. 진술인 (또는 계좌명의자)의 투자내역은 어떠한가요? (가입통장, 상품가입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가입(투자)금액:

가입시기:

판매은행 및 지점명:

판매직원명:

4-1. 가입 당시 작성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해당 서류들의 서명·날인, 기재 내지 표시는 진술인이 직접 하였나요. 아니면 직원이 대신하였나요. (일부는 진술인이 직접, 일부는 직원이 대신하였다면 이를 구분하여 기재 부탁드립니다.)

5. 진술인(또는 계좌명의자)는 과거에 주식투자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등은 제외)에 가입한 적이 있나요(특히 DLS나 DLF 등 금리연계형 금융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 주실 것). 있다면 그 내역(투자나 가입일자, 금액, 상품명 등)을 기재해 주세요.

6. 진술인은 어떤 경위로 본 금리연계상품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은행용】

7. 투자를 결정하실 때 누구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나요? 직원이 사용한 구체적이 표현을 기재해 주시고(예를 들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다 등), 은행직원과의 녹음파일, 문자내역,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8. 투자 시 판매회사로부터 상품설명서, 상품제안서, 약관 등의 자료를 제공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그 자료는 무엇인가요?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9. 진술인에게 본 금리연계상품에 투자한 돈은 어떠한 자금인가요? (예를 들어, 노후준비자금, 결혼준비자금, 전세보증금 사용예정자금, 여유자금 등)

10. 위 돈을 본 금리연계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투자 당시 진술인은 본 금융연계상품을 어떠한 상품으로 인식하였나요.

11. 본 금리연계상품은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금리가 행사가격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금리가 하락폭이 클 경우에는 투자원금 100%에 가까운 손실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데, 진술인은 투자 당시 이러한 사실을 설명 듣거나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은 바가 있나요?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2. 본 금리연계상품은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³⁾ 중 2번째로 높은 등급인 적극투자형 이상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내지 펀드 위험등급 6등급 중 첫 번째로 높은 등급인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인데, 진술인은 투자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나요?

13. 본 금리연계상품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10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불균형한 수익손실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 진술인은 투자 당시 이러한 사실을 설명 듣거나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은 바가 있나요?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우리은행용】

14. 구체적으로 본 금리연계상품은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금리가 일정한 행사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 대비 금리가 0.01% 추가 하락할 때마다 금리하락분의 200 ~ 330%에 달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진술인은 투자 당시 이 사실을 설명 듣거나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은 바가 있나요?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5. 본 금리연계상품과 관련해 독일, 영국 등의 금리는 2018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는데, 진술인은 투자 당시 이 사실을 설명 듣거나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은 바가 있나요?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6. 위 11~15항 질의에 기재된 본 금리연계상품의 특성, 구조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진술인이 전혀 다르게 (예를 들어 원금손실 100% 가능한 상품인데,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인식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진술인이 인식한 내용은 무엇이고 진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은행용】

17. 기타 덧붙여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9. . . .

위 진술인_____ (날인 또는 서명)⁴⁾

4) 반드시 진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